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2.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2월 19일
- 다. 상정 및 심사일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8. 2.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유 병 현

가. 제안이유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 방지 및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주요 개정 골자

1)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4조의2)

‘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

- 2)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 (안 제5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06.10.4.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07.4.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감면규정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함
- 3)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제1항 ~ 2항)
「문화재보호법」이 '07.4.11.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으로 함
- 4)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농어민 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규정 신설
-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 제11조)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정비
- 6)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13조)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7. 10. 10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이첩·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의2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65세이상)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으면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역모기지 제도에 의한 상품이 2007. 7. 1 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 10. 4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7. 4. 5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도서관법으로 수정하고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현행 마포구세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은 안 부칙 제3항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삭제하고, 감면조례인 동 개정조례안에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삭제된 사항과 같은 내용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부칙 제3항(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제16조의2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미 적용기한이 경과되어 삭제하였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일반조례인 마포구세 조례 제22조의2에 규정된 신용

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제1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